

저작권의 壽命은 얼마나 되는가

韓勝憲

한국저작권연구소장·변호사

저작권—정확히는 저작재산권—은 일반 재산권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동안만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다. 이처럼 저작재산권에 시간적인 제한을 가하는 까닭은 저작물의 私益性과 公益성을 조화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즉 저작물은 저작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산물이지만 동시에 先인의 정신적 유산과 동시대인의 업적에 힘입는 바가 적지 않으며, 나아가서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문화적 재산이기 때문에 권리의 壽命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이용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저작권법의 규정을 보면, 저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한 경우에는 死亡時 起算主義을 취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公表時 기산주의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무방식주의 국가로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법 제10조 제2항) '저작자의 사망'이나 '저작물의 공표시'는 엄격히 말하자면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라 보호기간의 만료시기를 결정하는 기산점이라고 해야 옳다.

저작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서 그 보호기간에 차이가 있다.

(1) 원칙적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이것은 무명 또는 異名 저작물 등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법 제37조)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實名 저작물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이 끝날 때까지이다.(법 제36조 제2항)

저작물은 저작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나 인류의
 문화적 재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작물권리와 함께 누려야 할
 수명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私益性과 公益性을
 조화시키려는 것이 저작재산권이다.

(2) 무명·이명저작물(법 제37조 제1항), 법인 등 단체명의 저작물(법 제38조), 영상저작물(법 제77조)은 공표 후 50년간 보호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

즉, 단체명의 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은 창작한 때부터 10년이내에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된다.(법 제38조 및 제77조 각 단서)

(3) 무명·이명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공표 후 50년 이내에 (가)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및 (나) 저작자의 실명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 보호기간대로 저작자 사망 후 50년까지.(법 제37조 제2항)

(4)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구법에서는 공표 후 10년간으로서 일반 저작물보다 현저히 차별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새 저작권법에서는 사망 후 50년주의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어느 저작물보다도 대단한 권리신장을 이룩한 셈이다.

(5) 계속적 간행물, 順次간행물의 공표시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있다. 즉, 신문·잡지처럼 책·號 또는 回 등으로 공표되는 계속적 간행물은 每冊·매호 또는 매회의 공표시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한다.

또한 벡과사전, 대하 드라마처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순차간행물)은 최종부분의 공표시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 다만,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의 공표시를 그때까지 간행된 부분의 공표시로 본다.(법 제39조 제2항).

순차 간행되는 저작물 중에도 문학전집처럼 각 권이 독립된 저작물일 경우에는 각 권의 간행시기를 각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

(6)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우리나라에 常時 거주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포함)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밖의 외국인 저작물은 세계저작권조약(UCC)에 의하여 내국민대우와 상호주의(Reciprocity)의 적용을 받는다. 즉 UCC 체약국을 본국(country of origin of the work)으로 하는 저작물은, 만일 본국의 보호기간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그 본국의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해주면 된다.(UCC 제4조 제4항)

그리고 반대로 상대국의 보호기간이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보다 길더라도 우리 법에 의한 보호기간 만큼만 보호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死後 70년주의를 택하고 있는 서독의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후 50년까지만 보호해주면 되고, 사후 25년 주의를 취하고 있는 폴란드의 저작물은 우리나라에서도 25년까만 보호해주면 충분하다.

(7) 번역권에 관한 보호기간은 좀 특이하다. 앞서의 UCC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한

국에서 그 조약이 시행된 1987년 10월 1일 이후에 나온 외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만 보호기간을 따지면 된다.

외국저작물의 이용형태는 번역출판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번역권도 저작권과 같은 기간 동안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UCC에는 번역권 7년강제허락조항이 있어서, 발행 후 7년 안에 번역물이 나오지 않았거나, 나왔더라도 결판이 되었을 경우, 조약상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그 저작물을 번역 발행할 수 있다.

외국저작물 뿐 아니라 국내 저작물의 번역권도 마찬가지로 7년이 지나면 강제허락제도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여기에는 ① 번역권자(저작권자 또는 번역권만 취득한 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②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번역권자나 그의 居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③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 문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④ 역시 문공부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법 제49조 제1항, 제2항)

교육·연구·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어 저작물을 국어로 번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7년'을 '1년'으로 단축한다(법 제49조 제3항). 이런 것은 번역권의 단기보호제도처럼 보이지만 그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서 실효성이 적으며, 구법과는 달리 번역권이 소멸하지는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보호기간의 만료시기를 셈하는 기산점인 '사망', '창작' 또는 '공표'는 그 날짜를 일일이 알아내기가 아주 힘들다. 이러한 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정함에 있어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법 제40조).

인류문명의 起源과 「한」

김상일 역음

세계 문명의 뿌리, 그 한국적 맥락.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고
수메르는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제 I 부 아시아 및 인디언 문명의
기원과 「한」

제 II 부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
되었다."

제 III 부 근동아시아 문명 개관

제 IV 부 구약 성서와 수메르

제 V 부 수메르와 한국 문명

* 값 5,000원

강남구 대치동 611 가나출판사 전화 554-5206

註解 桓檀古記

金殷洙 註解

三聖紀(安含老·元董仲)

檀君世紀(李晶)

北夫餘紀(范樟)

迦葉原夫餘紀(范樟)

太白逸史(李陌) 값 5,000원

符都誌

朴堤上 著 / 金殷洙 譯解

符都誌·朴堤上·小符都誌·朴堤上/
澄心錄追記·金時習·要正澄心錄演
義後記·朴錦·金時習의 「澄心錄追
記」考察·金梓朱·韓國 上代史 와
그 文化·金殷洙 값 4,000원

강남구 대치동 611 가나출판사 전화 554-5206

檀君實史에 관한 文獻考證

李相時 著 값 7,000원

우리 나라 檀君 관계 文獻은 물론, 中國·日本의
모든 史料를 對比·分析한 檀君 研究書의 決定版

天符經과 檀君史話

金東春 著 값 5,000원

天符經·檀君史話·祭天史話·桓民族
의 移動史話·韓國語와 世界諸語 /
부록: 天符經과 自然科學

강남구 대치동 611 가나출판사 전화 554-5206

韓民族의 뿌리思想

哲學博士 宋鎬洙 著

天符經의 始源探究

三一神話·參僉戒經의 脈絡

韓民族 固有思想의 現代的 意義

「한」思想 값 7,000원

開天經

哲學博士 宋鎬洙 著

우리 뿌리의 思想을 담은
三大經典, 天符經·三一神
話·參僉戒經을 알기 쉽게 풀
이하였다. 값 6,300원

강남구 대치동 611 가나출판사 전화 554-5206